

# 정보시스템 감리원 윤리 가이드

2014.

한국정보화진흥원

## 【목 차】

제1장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필요성	
제2장 윤리란 무엇인가? .....	2
제1절 윤리의 정의와 유사개념	
제2절 윤리성의 발달	
제3절 윤리 경쟁력	
제4절 공직자의 윤리	
제3장 분야별 윤리 가이드 현황 .....	7
제1절 공직자 윤리	
제2절 건설업 윤리경영	
제3절 공인회계사 윤리기준	
제4절 기업 윤리경영	
제5절 현황 분석	
제4장 정보시스템 감리원 윤리규정 및 기준 .....	26
제1절 전자정부법령 및 감리기준상의 윤리규정	
제2절 전자정부법령 및 감리기준상의 처분기준	
제3절 정보시스템 감리원 윤리강령	
제5장 정보시스템 감리원 윤리 가이드 구성 .....	31
제1절 윤리 가이드 체계	
제2절 감리원 윤리 강령	
제3절 감리원 윤리 준수 요소 정의	
제4절 감리원 윤리성 관리 점검항목	
제5절 정보시스템 감리원 윤리 가이드 본문	
제6장 맺음말 .....	49

# 제 1 장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제 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정보시스템 감리원 윤리강령이 제정되어 있으나 포괄적이고, 선언적인 내용으로 감리원이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가이드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감리 법령 위반 및 비리에 관한 사항은 중요한 요소이나 이에 대한 사례 등 구체적인 가이드가 없는 상태이다. 공직자의 경우,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에 따라 업무와 관련한 금품·향응 수수금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운용하고 있다. 건설감리의 경우, 감리원 윤리규정을 제정하여 감리원 윤리의식 강화를 위한 노력과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하여 부실공사 및 부조리를 방지하고 있다. 최근 감리 현장에서 복장 및 태도가 불량한 감리원이 나타나고 있는 등 감리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일을 예방하기 위한 가이드 제시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가이드 개발을 통해 장기적으로 감리원의 윤리 의식 제고 및 권위를 확보하고 감리원 윤리성 보장을 통한 정보시스템 감리결과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있다.

## 제 2 장 윤리란 무엇인가?

### 제 1 절 윤리의 정의와 유사개념

#### 1. 윤리의 정의

국어사전에서 정의하고 있는 윤리개념은 다음과 같다. 윤리란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이다. 즉, 실제의 도덕규범이 되는 원리로서 도덕보다 더 추상적인 것을 의미한다. 윤리는 공동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어떤 기준에 의해 행할 것인가에 대한 원리 및 준거이다. 즉 옳다고 믿는 행동규범 혹은 기준이라는 규범적 의미로 정의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좋다, 옳다, 해야한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좋다(good)는 도덕적 차원에서 사람 혹은 사물에 대하여 존중(혹은 존경)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옳다(right)는 의도한 것이 혹은 일하는 방식과 방향이 어떤 기준에 일치한다는 의미와 ‘선량하다’, ‘양심적이다’ 라는 의미를 모두 지니는 개념이다. 해야한다(ought to)는 “옳기 때문에 해야 한다. 그른 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 와 같이 책임과 관계되는 개념이다.

윤리는 법과 다르다. 물론 법에도 옳고 그름, 그리고 정의가 내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생각들이 문서화되는 순간 순수한 윤리적 특성은 일부 사라지게 된다. 결국 순수한 윤리는 그 자체로서 각 개인의 내면세계에 존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개인 내면의 윤리가 밖으로 발현되어 나타나는 것이 일상생활에서의 언어이고 행동인 것이다. 개인의 행동에 관한 외적 규제는 이미 순수한 윤리의 개념을 벗어난다. 윤리는 항상 마음속에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윤리는 뇌물수수에 따른 외적 제재가 있기 전에 개인의 내부로부터 울려 퍼지는 뇌물을 받지 않도록 하계끔 하는 마음을 의미한다. 1)

---

1) 현대사회와 직업윤리, 김기태

## 2. 윤리의 유사개념

윤리는 매우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도덕, 정의, 책임과 같은 많은 유사한 개념이 존재한다.

도덕은 국어사전에서 ‘사회의 구성원들이 양심, 사회적 여론, 관습 따위에 비추어 스스로 마땅히 지켜야 할 행동 준칙이나 규범의 총체. 외적 강제력을 갖는 법률과 달리 각자의 내면적 원리로서 작용하며, 또 종교와 달리 초월자와의 관계가 아닌 인간 상호 관계를 규정한다’ 로 정의하고 있다. 보통 윤리와 도덕은 같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 보편적이다. 즉 도덕은 사회적 산물로서 옳은 행동의 기준이라는 의미로 윤리와 혼용해서 쓰이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정의는 사회에서 가치롭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각 개인이 마땅히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대로 분배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 윤리의 개념인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과 유사한 개념이다. 각 개인은 정의에 기반을 둔 불가침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전체의 복지를 위한 것이라 해도 침해할 수 있다. 정의로운 사회에서 개인의 권리와 자유는 다수의 이익에 우선하여 존중받아야 한다.

책임이란 어떤 규범적 상태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개인을 강제하는 것을 말한다. ‘책임감’이란 자발적으로 책임을 지려는 마음의 상태를 말한다. 한 사람이 ‘어떤 행동에 대하여 책임있다’고 하려면, 어떤 행동에 대하여 그가 사고했고, 의도했으며, 이런 사고와 의도 속에서 행동했을 때를 말한다. 어떤 사람이 어떤 제도나 조직속에서 일정한 의무와 권한이 있다면, 그가 책임지고 있는 사물이나 사람이 한 일에 대하여 책임있다고 본다.

## 제 2 절 윤리성의 발달

기업이나 개인이 윤리성을 상실하게 되면 대외적으로는 신용도 하락과 더불어 사람들의 외면을 초래하게 되고, 정보교환의 발달로 인해 기업이나 개인의 윤리성이 즉각 노출되어 기업과 개인은 심각한 사회적 비난을 받게 된다. 심지어는 사회에서 도태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대내적으로는 집단

내의 자공심이 저하되어 궁극적으로는 기업과 개인의 이익이 감소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내·외부의 불공정과 성희롱 등과 같은 비윤리적인 행위로 인한 제반의 문제를 윤리교육을 통해 비윤리적 행위를 예방하고 윤리실천력을 향상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도덕적 판단의 수준을 콜버그의 도덕발달단계에 따라 나누고 있다. 단계들은 불변의 연쇄를 이루고 있으며 사람은 반드시 순서에 따라 각 단계를 거쳐 간다. 단계들은 계층적 통합을 이루고 있다. 낮은 단계는 높은 단계의 도덕적 추론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높은 단계는 낮은 단계의 도덕적 추론을 포괄하고 이해한다. 발달은 인지적 불균형이 생성될 때 발생한다. 도덕적 난관에 부딪혔을 때 그것을 해결하려는 인지적 판단이 서지 못한 상태를 불균형이라 한다. 이러한 딜레마적 상황에서 현재의 인지적 구조를 새로운 인지적 구조로 전화하여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윤리성 발달이 이루어진다. 2)

[표] 콜버그의 도덕발달단계

수준	단계	특징	사례
전인습적 도덕성	1단계	타율적 도덕성	처벌을 피하기 위해 명령과 규율에 복종하는 노예적 행동. 야단맞지 않음
	2단계	개인주의 보상 지향성	동료가 뇌물을 받으면 나도 받는다. 뇌물은 부족한 보수의 보충 수단. 원하는 것을 함
인습적 도덕성	3단계	일차 집단위주 상호호혜성 원칙	조직의 생존과 명예가 최우선 순위, 객관적 기준보다는 동료의 청탁이 우선. 착한 아이
	4단계	법치주의, 합법성 의무와 사회질서	모든 행정은 법대로 처리, 책임과 의무 이행 추구. 사회질서. 권위복종
후인습적 도덕성	5단계	사회 전체의 복지 시민의 권리 존중	법 규칙의 이행보다 공평한 봉사. 민주적 법률
	6단계	사회를 넘어선 도덕적 관점, 양심의 가책	사회적 기준이나 법의 제한과 관계없이 자신이 선택한 도덕 원리에 어긋나는 행위는 하지 않는 양심적 행동. 보편적 가치

2) 현대사회와 직업윤리, 김기태

역지사지에 근거한 도덕적 판단은 정의 또는 공평의 원칙과도 일맥상통하게 된다. 불균형 상태의 도덕적 상황은 해결되지 않은 상충하는 주장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한 상황의 해결은 각자가 관련된 모든 당사들로부터 공정하다고 인식될 수 있는 정의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역지사지에 의한 윤리적 직관은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의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방법이다. 이와 같이 윤리성을 높이려는 활동들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윤리 사회로 성숙된 발전을 꾀할 수 있다.

### 제 3 절 윤리 경쟁력

윤리 경쟁력이란 윤리성이 곧 국가 경쟁력이자 개인 경쟁력이 된다는 것이다. 공공윤리는 모든 사람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사례를 만드는데 필요한 것이다. 공공윤리의 기반을 확고히 하는 것은 인간답게 살기 위한 사회를 만드는 기초이다. 이러한 사회의 윤리적 기반은 인간으로서 가치를 얼마나 향유하느냐의 정도 즉, 인간 개발의 크기에 의해 좌우된다. UNDP(국제연합산하 개발지원프로그램)는 각국의 교육 수준, 국민소득, 평균수명 등을 조사해 인간개발 성취정도를 평가하는 인간개발 지수를 해마다 발표하고 있다.

공공윤리가 여러 차원이 있다고 한다면, 최하위 수준이 부패이다. 부패를 척결하는 것은 윤리가 확립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부패의 심각성을 객관적으로 알기 위해 국제투명성기구는 국가별 부패지수와 뇌물공여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2014년 국가별 부패지수는 한국의 경우 7.05(10점기준)로 세계 7위의 부패국가로 보도되었다. 2011년 국제투명성기구(IT)가 실시한 뇌물공여지수 조사 결과 한국은 10점 만점에 7.9점을 기록해 조사 대상 28개 나라 가운데 13위를 기록했다. 이는 외형적 성장에 걸 맞는 내면적 발전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신뢰는 진실성과 호의를 의미하며 부패가 공공윤리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라면 신뢰는 공공윤리를 확립하기 위한 고차원적인 방법이다. 신뢰는 사회적 관계 속에 존재하며, 신뢰로 인해 행위자들이 협동할 수 있고, 감시와 통제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오늘날 법적 제도 중심적인 방법으로 신뢰사회를 만들어 가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대중교통수단에 경로석을 지정한다든지, 부모부양을 하는 자식에게 더 많은 재산상속을 해줄 수 있게 하는 등이 있다. 사람들은 자기의 이기심을 자제시키는 모든 제도나 윤리는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 자유는 그 자체로는 사람들이 현명하게 행동하는 것을 보장하지 않으므로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공윤리가 필요하게 된다.

#### 제 4 절 공직자의 윤리

우리나라는 공무원 윤리강령을 발표하고 이의 준수를 강요하고 있다. 이 강령은 주로 금전적인 측면에서 개인의 부패행위에 대하여 윤리적으로 지켜할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강령들은 협의의 윤리로서 개인의 윤리차원에서 사익과 공익간의 갈등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 강령은 갈등의 매개체는 금전적인 면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기본전제로 하고 있다. 하지만 단순히 금전적인 부패에 대해서 법조항을 만들어 규제를 하고, 처벌을 하는 것으로 무감각해진 윤리의식을 소생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오히려 처벌보다는 각자의 윤리성 회복이 더 근본적인 방법이다.

공직자를 비롯한 지도층에게는 더 높은 윤리기준이 요구된다. 그들에게 더 높은 윤리기준이 부과되는 이유는 그들의 의사결정이 그 공동체에 속한 여러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정보시스템 감리원의 경우도 처벌기준을 살펴보면 벌칙 적용시 공무원에 준하여 처벌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정보시스템 감리원의 행동과 결과가 정부와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정보시스템 개발 및 유지관리, 운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정보시스템 감리원도 공직자가 지켜야할 금전적 부패보다는 각자의 윤리성을 통해 보다 높은 수준의 감리를 향한 감리원의 비전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또한 감리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직업 윤리와 예절을 겸비하여 성숙한 전문가적 윤리성을 기반으로 감리를 수행할 때 발주기관과 사업자의 동반자적 협업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 제 3 장 분야별 윤리 가이드 현황

### 제 1절 공직자 윤리

“공직자윤리법”은 1981년 제정되어 1983년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 등록재산 공개 및 재산형성과정 소명과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공직자의 선물신고 및 주식백지신탁,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이다.

공무원 실무자 보다는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윤리 규정으로서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가 공직자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게 하며 특정 분야별로는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www.peti.go.kr)을 운영하고 있다.

[표] 공직자 윤리제도

구분	세부 규정	비고
재산 등록 및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산등록 의무자</li> <li>▪ 등록대상 재산</li> <li>▪ 등록시기</li> <li>▪ 등록재산 공개</li> <li>▪ 재산심사</li> </ul>	
주식백지 신탁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식백지신탁대상자 및 조치 사항</li> <li>▪ 백지신탁재산의 운용</li> <li>▪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운영</li> <li>▪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및 조치</li> </ul>	
선물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물신고 요령</li> <li>▪ 신고선물관리</li> </ul>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업제한 여부 확인</li> <li>▪ 취업승인 신청</li> <li>▪ 임의취업자 일제조사</li> <li>▪ 퇴직공직자 업무취급제한</li> <li>▪ 행위 제한</li> </ul>	피감리업체와의 독립성 측면
공직유관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정 대상</li> <li>▪ 공직유관단체현황: 총 942개기관 (2015.1.1)</li> </ul>	

본 법령의 대상이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정보시스템감리원 윤리 규정에 적용할 사항은 거의 없으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의 업무취급제한, 행위 제한 등에 대한 규정은 사업자(피감리업체)와의 독립성 측면에서는 참조가 가능할 것이다.

일반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건전한 사회윤리 확립과 부패방지 노력을 요구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대통령령으로 공포된 “공무원 행동강령” 과 기관별 행동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표] 공무원 행동강령

구분	세부 규정	비고
공정한 직무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li> <li>▪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li> <li>▪ 제6조(특혜의 배제)</li> <li>▪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li> <li>▪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li> <li>▪ 제9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li> </ul>	발 주 자 , 피 감 리 업 체와의 독 립성 측면
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0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li> <li>▪ 제10조의2(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li> <li>▪ 제11조(알선·청탁 등의 금지)</li> <li>▪ 제12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li> <li>▪ 제13조(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li> <li>▪ 제14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li> <li>▪ 제14조의2(금품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li> </ul>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5조(외부강의·회의등의 신고)</li> <li>▪ 제16조(금전의 차용 금지 등)</li> <li>▪ 제17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li> </ul>	
위반시의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8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li> <li>▪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li> <li>▪ 제20조(징계 등)</li> <li>▪ 제21조(금지된 금품등의 처리)</li> </ul>	

공무원 행동강령중 부당 이득 수수 금지, 특혜 청탁 등의 규정 이외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등은 발주자와 사업자(피감리업체)와의 독립성 측면에서 세부 요건을 준용할 수 있을 것이다.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대한 대항이나 시정요구는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선언적인 규정이라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와 관련하여 직계 존비속, 4촌 이내의 친족관계는 정보시스템감리에 있어서도 독립성 측면에서 유사하게 회피사유가 규정되어 있으나 제5조 제1항 3호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는 정보시스템감리원 배치기준 수립에 준용할 수 있다.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 ① 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 2.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 3.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공무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근 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에서 그 공무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재배정하고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 공무원 행동강령 (대통령령 제22471호, 2011.2.3.)

일반적으로 “강령(code)”은 “특정한 조직이나 전문가 집단(예를 들어서 의사, 변호사, 회계사, 공무원 등)이 지향해야 할 바람직스러운 가치를 명문화한 것”으로서, 이러한 집단들의 열망이나 행동방향에 대한 안내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다.

강령이 그 속성상 규범성과 실천성을 모두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속성을 기준으로 강령은 크게 3가지로 유형화하기도 한다. 물론 현재 대통령령으로 제정·운영하고 있는 강령은 이 중에서 “행동강령”에 해당된다.

- 윤리강령(code of ethics) : 조직의 내부 구성원들이 기본적으로 지향해야 할 가치를 담은 윤리지침
- 행동강령(code of conduct) : 윤리강령을 보다 구체화하여, 가치별로 구체화되고 세분화된 내용과 절차를 담고 있어서, 구체적인 행동의 표준으로 작용
- 실천 강령(code of practice) : 행동강령을 보다 구체화한 것으로서, 가치의 표현을 넘어서, 특정 영역 혹은 행위와 관련하여 공무원들이 따라야 하는 표준화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명료하게 규정.

행동강령과 실천강령은 윤리강령에 비하여 상호 유사성이 높다. 그리고 실천강령은 행동강령을 보다 구체화한 것으로서, 법체계에 비유하면 시행령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강령 체계상 현재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이 표준강령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면, 개별 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제정하는 행동강령은 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보다 구체화된 것으로서 실천강령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강령은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직무의 수행과정에서 기대되는 바람직한 “선”을 행하고, 그렇지 않은 “악”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안내자의 역할을 한다. 즉 강령을 통하여 무엇이 공무원에게 필요한 행동이며, 어떠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를 말해주는 때문이다.

이렇게 강령은 규범적이고 선언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서, 개별 공무원 입장에서는 특정한 경험에 기초한 가치의 인식보다는, 경험 이전에 바람직한 가치를 습득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때문에 자신의 경험에 기초하지 않은 가치규범에 대하여 공무원들이 쉽게 수용하기 어려운 현실적 어려움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p>☞ 행동강령이 지니고 있는 기본적 성격은 다음과 같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범성(표준행위의 준칙)</li> <li>• 실천성</li> <li>• 자율성</li> <li>• 가이드라인(지침)</li> <li>• 투명성</li> <li>• 예방 지향성</li> </ul>
출처 :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을 위한 참고자료 (2003.5), 부패방지위원회

## 제 2 절 건설업 윤리경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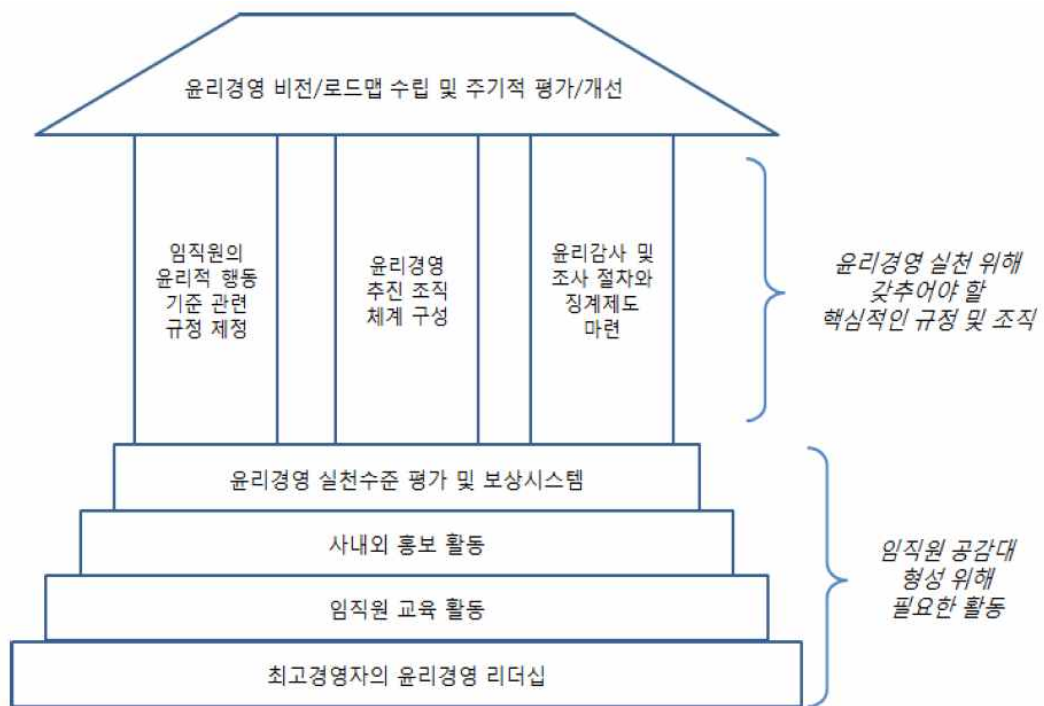
건설공사의 점검업무를 수행하는 자(점검자)가 건설현장 등에 출입하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행동요령을 규정한 국토교통부 고시 “청렴도 향상을 위한 건설현장 등 점검자 행동요령”에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일부 준용하고 건설분야 점검활동에 적용할 수 있는 행동요령을 제시하고 있다.

[표] 건설현장 점검자 행동요령

구분	세부 규정	비고
공정한 점검업무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4조(성실의무 등)</li> <li>▪ 제5조(점검업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li> <li>▪ 제6조(특혜의 배제)</li> <li>▪ 제7조(이해관계 점검업무의 회피)</li> <li>▪ 제8조(청탁의 배제)</li> </ul>	발 주 자 , 피 감 리 업 체와 의 독립성 측면
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0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li> <li>▪ 제11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li> </ul>	
점검계획수립·점검 실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1조(점검 계획의 수립)</li> <li>▪ 제12조(점검자에 대한 교육)</li> <li>▪ 제13조(점검 순서 등)</li> <li>▪ 제14조(점검업무 수행)</li> </ul>	감 리 활 동 과 유사
이의제기 절차 및 점검결과 처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5조(이의제기 절차)</li> <li>▪ 제16조(점검결과 보고)</li> <li>▪ 제17조(점검결과 처리)</li> <li>▪ 제18조(사후관리 등)</li> </ul>	이 의 제 기 절차 제공
위반시의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9조(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li> <li>▪ 제20조(징계 등)</li> </ul>	

건설산업 분야에서는 경제적, 법적 책임 수행은 물론 사회 통념으로 기대되는 윤리적 책임의 수행까지 기본적 의무로 인정하고 기업윤리 준수를 행동원칙으로 삼아 실천하는 “윤리경영”을 내세우며 대한건설협회에서는 “윤리경영 매뉴얼”을 제정, 발표하였다.

윤리 경영 도입, 실천을 위하여 임직원의 윤리적 행동기준을 제시하는 윤리강령, 행동지침 등과 같은 규정들과 윤리경영을 추진할 조직 체계, 윤리감사·조사 절차 및 징계 제도를 갖추는 것이 가장 핵심적이다. 아울러 윤리경영에 대한 임직원 공감대 형성을 위한 임직원 교육 등 다양한 활동들이 요구되며, 회사의 윤리경영에 대한 비전 및 로드맵 수립도 필요하다. 조직적인 윤리경영을 통하여 조직 구성원의 윤리적 업무수행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그림] 윤리경영 도입·실천을 위한 구성요소

건설 감리분야에 있어서도 감리자의 정신적 자세를 바로 하고, 책임의식과 사명감을 높이고자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前 한국건설감리협회)에서는 감리원 윤리헌장과 행동강령을 작성하여 공표하고 있다. 또한 전문감리교육에 윤리교육을 포함하여 부조리 방지와 의식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 협회 감리원 윤리헌장 >

- . 우리는 전문건설기술자로서 자긍심과 시대적 사명감을 가지고 보다 견실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맡은바 역할을 다함은 물론 근면 성실하고 창의적인 자세로 선진건설문화 창달에 앞장선다.
- . 우리는 건설공사 감리원으로서의 권한과 의무를 재인식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물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발주자와 시공자는 물론 이를 이용하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감리원이 된다.
- . 우리는 건설공사 감리원으로서 성실한 자세로 업무에 임하며, 감리능력 배양과 기술축적을 위하여 노력하는 감리원이 된다.
- . 우리는 건설공사 감리원으로서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반법령과 사회규범을 충실히 준수하며, 책임감 있고 품위있는 감리원이 된다.

< 협회 감리원 행동강령 >

- 신뢰받는 감리원이 되기 위하여
  - 감리원은 발주자의 대리인으로서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를 갖는다.
  - 감리원은 시공자의 성실시공과 품질관리를 지도하는 기술자로서 공사의 원활한 진척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 감리원은 건설공사의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발주자와 사용자의 권익보호에 앞장선다.
- 노력하는 감리원이 되기 위하여
  - 감리원은 감리자로서의 역할을 바로 알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법령 및 감리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고 업무에 임한다.
  - 감리원은 설계도서내용과 설계의도를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감리업무에 임한다.
  - 감리원은 감리기술을 향상·발전시켜가기 위하여 항상 연구하는 자세로 업무 개선과 선진기술 습득 등 기술축적을 위하여 노력한다.
- 품위있는 감리원이 되기 위하여
  - 감리원은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며 공정하고 소신있게 일한다.
  - 감리원은 건설비리의 척결에 앞장선다.
  - 감리원은 정직·청렴·결백한 자세로 책임있는 행동을 하며, 모든 언행을 바르게 한다.

### 제 3 절 공인회계사 윤리기준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윤리기준위원회를 설치하고 국제회계사연맹(IFAC: International Federation of Accountants) 산하 국제윤리기준위원회(IESBA: International Ethics Standards Board for Accountants)가 제정 공표한 국제윤리기준을 수용한 “공인회계사 윤리기준”을 제정하였다. 이 윤리기준은 공인회계사가 전문직업인으로서 준수하여야 할 윤리기준을 정함으로써,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그 직무를 높은 수준으로 수행하게 하고 공익에 부합되게 하여, 공인회계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윤리 강령 >

##### (1) 성실

공인회계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솔직하고 정직하여야 한다.

##### (2) 공정

공인회계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편견이나 이해의 상충 또는 외부의 부당한 영향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 (3) 전문가적 적격성과 정당한 주의

공인회계사는 의뢰인이나 자신이 소속하고 있는 조직이 최선의 업무, 법규 및 기술에 입각하여 적격성을 갖춘 전문서비스(professional service)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적 지식과 기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공인회계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관련 기술적 또는 전문적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4) 비밀유지

공인회계사는 직무수행과정에서 지득한 정보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하며, 법적 또는 직업적으로 공개할 권리나 의무가 없는 경우에 적절하고 명확한 승인없이 어떠한 정보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공인회계사는 직무수행과정에서 지득한 기밀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5) 전문가적 품위

공인회계사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공인회계사의 품위를 실추시키는 행동을 삼가하여야 한다.

윤리강령 준수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위협은 상황에 따라 매우 다양하며 위협의 제거하거나 수용 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시키기 위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 또는 법규, 회계 법인에 의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 (1) 이기적 위협 : 공인회계사 본인, 그의 직계가족 또는 방계가족이 재무적 또는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발생한다.
- (2) 자기검토 위협 : 공인회계사가 과거에 본인이 판단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를 수행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 (3) 변호 위협 : 공인회계사가 공정성이 손상될 수 있을 정도로 어떤 입장이나 의견을 옹호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 (4) 유착 위협 : 공인회계사가 밀접한 관계로 인하여 타인의 이익에 지나치게 동정적이 되는 경우에 발생한다.
- (5) 압력 위협 : 공인회계사가 현실적 또는 잠재적인 협박의 가능성 때문에 공정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발생한다.

공인회계사는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정당한 주의 의무 결여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윤리적 책임은 공인회계사 윤리기준을 적용하고 법률적 책임은 민사적 책임과 형사적 책임으로 나눌 수 있다.

법률적 책임의 근거는 ① 위약, ② 과실, ③ 판단상의 착오, ④ 사해 등이 있으며 법적 책임의 유형은 감사의뢰인에 대한 법적 책임, 감사보고서 이용자에 대한 법적 책임, 제도 위반에 대한 형사책임으로 구분된다.

[표] 감사의뢰인에 대한 법적 책임

구분	외감법	민 법
회계감사 영역	외감법에 의한 회계감사	모든 회계감사
위법사유	임무해태(원고 입증책임)	고의 또는 과실(원고 입증책임)
면책사유	임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증명(피고 입증책임)	—
소멸시효	안 날로부터 1년, 보고서제출일로부터 3년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시로부터 10년
원고	감사의뢰인	피해자
피고	외감법상 감사인 (회계법인, 감사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 (회계법인, 감사반, 공인회계사)

[표] 감사보고서 이용자에 대한 법적 책임

구분	외감법	자본시장법	민법
회계감사 영역	외감법에 의한 회계감사	상장법인과 등록법인이 증권거래법에 의해 제출하는 재무서류의 회계감사	모든 회계감사
위법사유	중요한 사항을 감사보고서에 미기재 또는 허위기재 (원고 입증책임)	중요한 사항을 감사보고서에 미기재 또는 허위기재 (원고 입증책임)	고의 또는 과실 (원고 입증책임)
면책사유	임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증명(피고 입증책임)	임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증명(피고 입증책임)	—
소멸시효	안 날로부터 1년, 감사보고서제출일로부터 3년	안 날로부터 1년, 보고서제출일로부터 3년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시로부터 10년
원고	감사보고서를 믿고 이용한 제3자	선의의 투자자	피해자
피고	외감법상 감사인 (회계법인, 감사반)	외감법상 감사인 (회계법인, 감사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 (회계법인, 감사반, 공인회계사)

[표] 제도위반에 대한 형사적 책임

구분	외감법	공인회계사법
위법사유	중요한 사항을 감사보고서에 미기재 또는 허위기재 등	고의적 진실은폐 및 허위보고
피고	감사인(회계법인, 감사반) 또는 소속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

감사인에게 감사실패에 대한 책임은 물을 수 있으나, 감사위험과 기업실패에 대한 책임은 물을 수 없다.

- 감사실패(audit failure): 감사인이 감사기준이나 관련법규를 준수하지 못한 결과로서 잘못된 감사의견을 표명하였을 때 발생
- 감사위험(audit risk): 감사인이 합리적 확신수준하에서 감사증거를 구하기 위해 감사기준에서 정하는 감사절차를 적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오류가 존재하는 재무제표에 대해 잘못된 감사의견을 표명할 위험

감사의 품질(audit quality)은 재무제표에 포함되어 있는 오류를 감사인이 사실대로 발견할 가능성과 발견한 오류를 정직하게 보고할 가능성의 결합확률로서 감사인의 능력과 윤리 등에 영향을 받는다.

$$AQ = Pr(Dis) \times Pr(Rep)$$

*AQ* : 감사의 질  
*Pr(Dis)*: 재무제표상의 오류가 사실대로 발견될 확률  
*Pr(Rep)*: 발견된 오류가 정직하게 보고될 확률

발견가능성: 감사인의 전문지식 및 업무수행능력, **신의성실성**, 감사절차의 성격, 범위 및 시기의 선택 등에 의해 좌우  
보고가능성: **감사인의 인격, 독립성** 및 보고능력에 의해 좌우

현행 윤리기준은 2005년 9월 공포한 국제윤리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국제윤리기준은 2009년 7월 개정되어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어 공익실체 (Public Interest Entity), 특수관계자에 대한 독립성 규정 등을 반영하여 국내 윤리기준 개정을 위해 의견 조회를 진행하고 있다.

## 제 4 절 기업 윤리경영

### 1. KS 인증 심사원 윤리강령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운용요강에 따라 인증기관 신청시 “인증업무규정”을 제출하여야 하며 인증기관과 심사원은 이를 준수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인증업무를 원활하고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해 제정한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규정”에는 인증절차, 인증심사원 자격, 직무, 준수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심사기준, 심사실무 이외에 심사원의 역할과 자세, 심사원 윤리강령을 포함한 심사원 교육을 일정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제20조(심사원의 자격·직무 등)** ①심사원의 자격 및 직무는 규칙 제15조에 따르며 인증담당부서장은 신규심사원을 인증심사 반에 편성하기 전에 5회 이상 보

<p>조심사원으로 심사에 참여시키고, 그 실적을 검토하여 적격성을 평가한 후 인증심사 반에 편성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에 따라 선임된 심사원은 <u>인증심사의 전 과정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투명하게 심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u></p> <p>③연구원은 심사원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자체 교육을 8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심사원의 역할과 자세</li> <li>2. 표준화 관련법규(산업표준화법령 등) 및 심사기준</li> <li>3. 인증심사 실무</li> <li>4. 심사원 윤리강령(이하 “윤리강령” 이라 한다)</li> <li>5. 기타 심사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인증담당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li> </ol> <p>④원장은 인증담당부서장으로 하여금 심사원이 실시한 공장심사결과 보고서와 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결과 및 필요한 경우에는 입회심사의 실시 등의 수단을 종합적으로 사용하여 매년 심사원의 적격성을 재평가하여 보고하게 하여야 한다.</p> <p>⑤인증담당부서장은 제4항의 평가결과에서 부적격하다고 평가된 심사원은 제3항에서 따른 자체교육 등을 통하여, 그 적격성이 확보될 때까지 심사원의 활동을 중지시켜야 한다.</p> <p><b>제21조(심사원의 준수사항)</b> ①심사원은 제20조에 따라 별표 4의 <u>심사원윤리강령</u>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최초로 심사원으로 등록할 때 <u>별표4의 붙임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u></p> <p>②심사원은 인증심사에 임하기 전에 인증업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기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표준화 제도와 관계법규 및 시책 방향</li> <li>2. 인증대상 품목별 표준 및 심사기준의 내용(최신 본을 기준으로 한다)</li> <li>3. 심사기준 적용 및 인증심사 요령 등</li> </ol> <p>③심사원은 <u>인증업무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증심사의 대상이 되는 업체에 인증심사와 관련한 자문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일체의 상업적 이해관계가 없어야 한다.</u></p>
<p>출처 :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규정, 한국식품연구원 (2013.10.23.)</p>

심사원 윤리강령은 심사원이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윤리기준과 복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심사 과정에서 반드시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심사결과보고서, 교육결과, 입회심사 등을 통하여 심사원 적격성을 매년 평가하고 부적격 평가 심사원은 자격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다. 심사원 최초 심사시 윤리강령 준수에 대한 “서약서” 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표] KS 인증업무규정 “별표4. 심사원 윤리강령”

구분	세부 규정	비고
기본 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4조 윤리관 확립</li> <li>▪ 제5조 금품 등 수수행위 금지</li> <li>▪ 제6조 알선·청탁 등의 금지</li> <li>▪ 제7조 업무의 성실 처리</li> <li>▪ 제8조 임무완수 등</li> </ul>	
복무 수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9조 친절·공정</li> <li>▪ 제10조 품위유지</li> <li>▪ 제11조 비밀엄수</li> <li>▪ 제12조 직무이탈 금지</li> <li>▪ 제13조 직원 상호간의 신의와 경애</li> </ul>	
자율 감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4조 서약서 제출</li> <li>▪ 제15조 감독책임</li> <li>▪ 제16조 신고의무</li> <li>▪ 제17조 청렴도 측정 및 활용</li> </ul>	
권익보장과 조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8조 권익보장</li> <li>▪ 제19조 조치사항</li> </ul>	

## 2. ISACA 직업윤리강령

정보시스템감사통제협회(ISACA)는 협회 회원 및 자격증 소지자의 직무적, 개인적 행위에 대하여 직업윤리강령(Code of Professional Ethics)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회원 및 자격증 소지자의 행위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주지시키고 있다.

1. 감사, 통제, 보안 및 위험관리를 위한 기업 정보 시스템 및 기술을 효과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 적절한 표준, 절차 및 통제 기능의 구현을 지원하고 이러한 표준, 절차 및 통제 기능의 준수를 촉진해야 합니다
2. 전문적 표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성실하며 전문가적 주의로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3. 높은 수준의 행위와 품격을 유지하고, 해당 직업 또는 협회의 신뢰를 떨어뜨리지 않으며, 합법적인 방법으로 관련 당사자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4. 사법 당국에 의해 공개가 요구되지 않는 한 활동 과정에서 습득한 정보의 프라이버시와 기밀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부적절한 대상에게 공개할 수 없습니다.
5. 해당 분야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필요한 기술, 지식 및 능력을 사용하여 경쟁할 수 있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활동만을 수행하는데 동의해야 합니다

<p>6. 공표되지 않으면 결과의 보고를 왜곡시킬 수 있는 모든 중요한 사실의 공개를 포함하여 수행 작업의 결과를 적절한 대상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p> <p>7. 감사, 통제, 보안 및 위험관리를 포함한 기업 정보 시스템 및 기술을 관리 운영하는데 대하여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이해 관계자의 전문가 교육을 지원해야 합니다.</p>
출처 : Code of Professional Ethics, ISACA

### 3. IIA 내부감사인 윤리강령

국제내부감사인협회(IIA)는 내부감사 임무를 수행하는 직무에 윤리의식을 조성하기 위하여 “내부감사인 윤리강령”을 제정하였으며 위험관리, 통제 및 거버넌스 운영에 대한 객관적 검증에 있어 신뢰에 기반해야 하는 내부 감사활동에 필요한 원칙(Principles)과 행동규범(Rules of Conduct)을 제시하고 있다.

[표] IIA 내부감사인 윤리강령

구분	세부 규정	비고
원칙	성실한 책임감 (Integrity) 객관성 (Objectivity) 보안의식 (Confidentiality) 감사역량 (Competency)	
행동규범	1. 성실한 책임감 (Integrity) 1-3 고의로 불법행위의 당사자가 되서는 안되며, 내부 감사 업무 종사자로서 또는 직원으로서 불명예스런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2. 객관성 (Objectivity) 2-1 내부 감사인의 공정한 판단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것으로 간주되는 어떤 활동이나 관계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이런 참여는 조직의 이해와 상충될 수 있는 활동이나 관계를 포함한다. 2-2 직업적 판단을 저해하거나 저해시킬 것으로 간주되는 어떤 것도 받아서는 안된다 2-3 조사하여 알게 된 모든 사실들을 밝혀야 한다. 만약 밝히지 않는다면 검토한 내용의 결과보고를 왜곡시킬 수 있다 3. 보안의식 (Confidentiality) 4. 감사역량 (Competency)	

#### 4. 기술사 윤리강령

한국기술사회는 최고 전문인으로서 기술사의 책임과 사명을 자각하고 행동지침이 되는 “기술사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실천하도록 하고 있다. 이해관계 상충, 부정 행위 금지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요령을 행동지침에 규정하고 있다.

[표] 기술사 윤리강령

구분	세부 규정	비고
기본 강령	1. 국민의 안전·보건·복지와 환경의 보전 2. 자긍심과 직무능력 3. 정직, 성실, 공정성 4. 사명감과 품위유지 5. 신뢰와 협동 6. 비밀의 보전 유지	
행동 지침	1. 국민의 안전·보건·복지와 환경의 보전 2. 자긍심과 직무능력 3. 정직, 성실, 공정성 아. 기술사는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품질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모든 이해상충의 상황을 사전에 관련 당사자들에게 밝힌다. 4. 사명감과 품위유지 가. 기술사는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부당한 기부, 증여 기타 유사한 사례를 주거나 받지 않는다. 나. 기술사는 자재나 장비공급업자로부터 제품이나 공법을 시방서에 포함시켜주는 조건으로 대가성의 설계를 요구하거나 또는 다른 종류의 보수를 받지 않는다. 다. 기술사는 관련된 업무의 기업이나 고객과 거래하는 계약자 또는 다른 관계자로부터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금품이나 향응을 받지 않는다. 라. 기술사는 기술사가 아닌 자, 또는 다른 기업이나 기관과의 제휴나 합작을 비윤리적인 행동의 방편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마. 기술사는 부정하고 정직하지 못한 기업이나 개인이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지 않는다. 바. 기술사는 동료가 본 강령을 위배하여 기술사들의 권위와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전말을 본회 윤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구분	세부 규정	비고
	5. 신뢰와 협동 6. 비밀의 보전 유지	

## 5. 윤리강령 기업사례

SGS라는 스위스에 본사를 둔 검사, 조사, 시험,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기업의 경우, 인증 및 시험 사업에서 요구하는 높은 윤리성을 확보하고 회사의 명성을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으로 “직무 Integrity(정직) 유지하기”를 적용하고 있다.

SGS Code of Integrity(정직 강령)를 제정하여 모든 직원, 관리자 및 경영진 그리고 계열사에 적용하고 있다. 또한 하청업자, 2차 하청업자, 컨설턴트, 프리랜서, 벤처 파트너, 에이전트 및 SGS를 대리하거나 대표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Code of Integrity(정직강령)의 모든 항목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Code of Integrity(정직 강령)는 직무에서 지켜야하는 Integrity에 대한 기본 원칙을 규정하며 SGS 그룹, 사업 및 계열사 전반에 걸쳐 공유해야 하는 가치로 본다. SGS 직원은 이를 준수하여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올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시험인증산업의 경우 높은 윤리 기준을 고수하여야 하며 최상의 전문적 행동기준이 필요하다. SGS는 Code of Integrity를 통해 SGS 그룹이 지켜야 할 높은 수준의 Integrity에 대한 기본 원칙을 규정하며 SGS의 조직, 사업 및 계열사 전반에 걸쳐 공유하고 있다.

관리감독자에 의해 모든 직원이 반드시 교육을 받게 되는 Annual Integrity Training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임직원 모두가 Integrity 규정에 따른 행동규범 원칙을 지속적으로 상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육이수 기록은 모든 직원이 매년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해 유지 및 관리되고 있다. Annual Integrity Training 과정은 대화형의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보완 학습이 이



루어지며, 이 프로그램은 Code of Integrity에 포함된 일반 원칙이 SGS의 비즈니스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온라인 교육은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며 특히 신규 입사자를 위한 교육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최고 규제 준수 책임자(CCO)를 두어 모든 임직원의 윤리적 행동에 대한 지침서를 제공하며, 비윤리적 행동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CCO는 비즈니스 파트너가 준수해야 할 Integrity의 기준도 규정한다. Integrity 위반 의심 사례가 있으면 Integrity 헬프라인으로 전화하거나 온라인 서면 보고서 또는 팩스나 우편을 통해 신고하거나 상담하도록 하고 있다. 직무 행동 위원회는 Code of Integrity가 그룹에서 시행되도록 보장하고 경영진에게 모든 업무 윤리 문제에 대해 심의한다. 직무 행동 위원회는 이사회 의장, 최고 경영자, 이사회 임원, 최고 규제 준수 책임자 등 네 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분	세부 규정	비고
강령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신뢰 (Trust)</li> <li>2. 정직과 투명성 (HONESTY AND TRANSPARENCY)</li> <li>3. 책임 (ACCOUNTABILITY)</li> <li>4. 원칙(PRINCIPLES)</li> </ol>	
체크리스트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Do I suspect that the particular course of action may be illegal or unethical?</li> <li>2. How would this look if this decision were reported in a newspaper, or if I were to talk about this with my family and friends?</li> <li>3. Does the proposed course of action involve lying or being untruthful?</li> <li>4. Could the proposed course of action endanger the personal safety or health of others?</li> <li>5. Could the proposed course of action damage SGS or its reputation?</li> <li>6. Does the transaction have a legitimate business purpose?</li> <li>7. If the proposed course of action fails in any of these tests, you should seek advice and re-consider your decision</li> </ol>	

## 제 5 절 현황 분석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정보시스템감리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공직자 윤리제도와 공무원 행동강령, 감사 분야 전문인의 윤리강령 등을 검토한 결과 부정행위 방지에 대한 요건은 모두 반영되어 있으며 전문가로서의 태도와 객관적이고 공평한 직무 수행을 위한 행동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강령(code)은 특정한 조직이나 전문가 집단이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가치를 명문화한 것으로서, 윤리강령, 행동강령, 실천강령으로 구분되며 기본적인 원칙을 제시한 윤리강령과 함께 실질적인 행위를 가이드하기 위하여 행동강령을 제시하고 있다.

감사인(auditor)은 전문가적인 역할과 함께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며 감사인의 결과보고에 따른 책임성이 요구되고 있어 공인회계사, 건설감리원, CISA 등의 유사 분야 윤리규정을 준용할 필요가 있다.

[표] 국내외 유사자격 윤리강령 비교

자격 명칭	정보시스템 감리원	공인 정보시스템 감사사, CISA	공인내부감사사, CIA (Certified Internal Auditor)	공인회계사, CPA (Certified Public Accountant)	공인 정보시스템 보안 전문가, CISSP
주관 기관	정보시스템 감리협회	ISACA	IIA (Institute of Internal Auditors)	한국공인회계사회 (Korean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ISC2 (International Information Systems Security Certifications Consortium)
공익	국가와 사회의 이익을 우선				사회, 국가, 공공시설을 보호
객관성	객관적이고 합리적 근거에 따라 판단하며 청렴결백하고 소신 있는 언행 유지	기준에 맞추어, 객관적으로 업무 수행	최고수준의 직업인으로서 객관성 유지, 판단에 있어 자신 또는 타인의 이해에 따라 부적절하게 영향 받지 않음	편견이나 이해의 상충 또는 외부의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음	

자격 명칭	정보시스템 감리원	공인 정보시스템 감사사, CISA	공인내부감사사, CIA (Certified Internal Auditor)	공인회계사, CPA (Certified Public Accountant)	공인 정보시스템 보안 전문가, CISSP
성실성			성실한 책임감으로 신뢰 기반 마련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솔직하고 정직하게 행동	성실하고 충분한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
직업인의 품위		높은 수준의 품행과 품성 유지하고 부당한 행위 참여 안함		품위를 실추시키는 행동을 삼가	직업의식으로 품위 유지
준법성	관계 법령, 실무 준용	적절한 기준, 절차, 통제 사항의 제정과 준수, 수행한 감사 결과를 적절한 상대방에게 통보		관련 기술적 또는 전문적 기준 준수	명예롭고, 정직하고, 책임감 있고 합법적으로 행동
보안 의식	직무 중 취득한 정보에 대한 보안 유지, 개인, 제3자 이익 위해 누설 금지	법적 권한에 의해 요구되지 않는 한 보안 및 비밀 유지, 개인, 제3자 이익 위해 누설 금지	입수한 정보의 가치와 소유권 존중, 법적 또는 당연 의무로서 명시된 경우 아니면 적절한 승인 없이 정보 누출 금지	법적 또는 직업적으로 공개할 권리나 의무가 없는 경우에 승인 없이 제3자에 누설 금지	
역량	감리 기술 발전 및 자기 계발 노력	전문분야별 역량 유지, 자기 계발 노력	필요한 지식, 기술, 경험 보유	의뢰인이 최신의 업무, 법률 및 기술에 입각하여 적격성을 갖춘 전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전문적 지식과 기법을 지속적 유지	
전문교육 지원		이해관계자 정보시스템 보안 및 통제에 대한 이해 증진 위해 전문교육 지원			

## 제 4 장 정보시스템 감리원 윤리규정과 기준

### 제 1절 전자정부법령 및 감리기준상의 윤리규정

정보시스템 감리원 윤리에 대해서는 전자정부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비밀누설 금지, 감리원 명의도용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어 감리법인과 감리원에 대해서 처분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와 관련된 조항을 윤리 규정 관점에서 유추해 볼 수 있다.

정보시스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원은 공무원 의제규정을 두어 뇌물수수, 알선수뢰 등에 대해서는 공무원으로 간주하고 형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비밀누설, 명의도용 등의 처벌 규정에 대해서는 전자정부법 77조에 양벌규정을 두어 위반행위자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게 해당 조문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표] 전자정부법의 처벌조항

전자정부법	감리 관련 규정	윤리 규정
제7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3.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감리원	< 형법 > 제129조 (수뢰, 사전수뢰) 제130조 (제삼자뇌물제공) 제131조 (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제132조 (알선수뢰)	부정행위
제76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74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제74조(비밀누설 등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감리업무	비밀누설

전자정부법	감리 관련 규정	윤리 규정
⑤ 제58조제1항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정보시스템 감리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8조(감리법인의 등록) ①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 재정능력, 그 밖에 정보시스템 감리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법인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미등록 법인의 감리시행)
⑥ 제6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감리원증을 빌려 준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거나 감리원증을 빌린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0조(감리원) ③ 감리원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감리원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감리원 명의 도용
제7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6조제3항제5호 또는 같은 조 제5항·제6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인과 개인 의 공동 책임 과 감독의무

## 제 2 절 전자정부법령 및 감리기준상의 처분기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에 대한 처분기준은 전자정부법 제62조(감리법인의 등록취소 등)에 따라 시행령 제 77조(감리법인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등)에 정의하고 있으며 별표 5에 행정처분 기준을 두어 감리법인이 위반하는 경우 처분기준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정처분 기준 중에 감리원이 감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와 감리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에 대하여 감리원이 아니라 감리법인에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있다. 정보시스템감리 업무는 감리법인 책임주의로 규정하고 있으며 감리원의 윤리적 위반 사항과 처분기준은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전자정부법 시행령 별표5에 규정한 12가지 위반행위중 감리법인의 위반행위라기 보다는 감리원의 전문가적 부주의 또는 부정행위로 인한 처분기준에 대해서는 감리원에 대한 책임성 강화가 필요하다.

- 정보시스템감리기준 미준수
- 거짓으로 감리보고서 작성
- 감리원증 명의 도용

[표] 전자정부법 시행령의 행정처분기준

제77조(감리법인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등) ①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감리법인의 등록취소와 업무정지 등에 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감리법인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감리법인에 알리고, 공고하여야 한다.

별표 5 행정처분기준(제77조제1항 관련)

위 반 행 위	해당 법조문	처분기준		
		1차	2차	3차이상
라. 법 제57조제6항을 위반하여 감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 제62조제1항 제4호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사. 법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감리원이 아닌 사람에게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법 제62조제1항 제7호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9개월	
아. 법 제59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감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법 제62조제1항 제8호	경고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1999년 제정된 정보시스템감리기준에는 감리인의 준수사항이 윤리규정을 포함하여 포함되어 있었으나 2005년 12월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감리 의무화가 시행되면서 2006년 개정된 정보시스템감리 기준 부터는 제외되었다. 이는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위반이라는 포괄적 처분에 기준 해석상의 무리가 있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p>제4조 【감리인의 준수사항】 감리인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li> <li>2.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li> <li>3. 사실을 은폐하거나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li> <li>4.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수수하여서는 아니된다.</li> <li>5. 감리업무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감리의뢰인과 피감리인의 동의없이 외부에 공개하거나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li> <li>6. 이 기준 또는 관련규정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li> </ol> <p>출처 : 정보통신부고시 제1999-104호 정보시스템감리기준 (1999.12.22)</p>
---

### 제 3 절 정보시스템 감리원 윤리강령

정보시스템 감리협회에서는 2000년초부터 직무윤리 교재를 작성하여 윤리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실효성을 가지지 못한 상태였으며 2005년초 정보시스템감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전산원으로부터 부조리 신고에 따른 감리원 직무윤리 교육강화 요구를 받아 “정보시스템감리원 윤리강령”을 개정하고 주요 협회 행사에서 감리원 윤리강령을 선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정보시스템 감리교육에서는 윤리교육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이다.

<p>나는 정보시스템감리를 수행함에 있어 감리원으로서의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여 정보기술 발전에 기여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한다.</p> <p>나는 감리원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익의 달성을 우선으로 한다.</li> <li>-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한다.</li> <li>- 준법성과 비밀에 대한 보안을 유지한다.</li> <li>- 지속적인 자기계발을 통하여 전문성을 유지한다.</li> </ul> <p>출처 : 정보시스템감리원 윤리강령 (2005.11.10.)</p>
--

감리원 윤리 강령에 따른 행동지침을 마련하였으나 실무 적용시 준수해야 할 가이드로서는 다소 선언적인 조문으로 작성되어 있다.

- 공익의 달성을 위하여,
  - 국가와 사회의 이익을 우선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 나의 이익을 위하여 국가나 사회의 공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 객관성과 공정성의 유지를 위하여,
  -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항상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판단하며, 청렴 결백하고 소신있는 언행을 유지한다.
  - 공사를 명확히 구분하고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배격한다.
- 준법성과 보안의 유지를 위하여,
  -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 제 규정 및 실무 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관점에서 직무를 수행한다.
  - 직무 수행과정에서 인지한 정보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누설하지 않는다.
- 전문성의 유지를 위하여,
  - 감리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감리기술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 감리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의 확보와 유지를 위하여 부단한 자기계발 노력을 경주한다.

출처 : 정보시스템감리원 윤리강령 (2005.11.10.)



## 제 5 장 정보시스템 감리원 윤리가이드 구성

### 제 1 절 윤리 가이드 체계

정보시스템 감리원은 공무원과 같은 수준의 고도의 지적, 기술적인 전문성을 요하는 직업이므로 다른 일반 직업보다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윤리강령을 선포하고 자발적인 준수와 실천을 통해 사회전체가 감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에게 요구하는 윤리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감리원 윤리강령은 감리 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가치관을 명문화하고 스스로 나아가야 할 자아상, 자기책무, 최소한의 행동 준칙 등을 내걸어 자기규제를 행할 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윤리강령은 다소 포괄적이고, 선언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으므로 감리가이드를 통해 감리원이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제시를 통해 실효성이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윤리가이드 체계는 윤리강령에서 제시하는 강령과 행동 지침을 감리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며, 감리 현장에서 감리원이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태도와 예절을 가지고 감리 독립성을 유지하여 윤리 기준에 부합하는 행동요령서가 되도록 구성한다.

행동강령과 행동지침에 포함된 공익의 달성, 객관성과 공정성 유지, 준법성과 비밀에 대한 보안유지, 지속적인 자기 계발을 통하여 전문성 유지의 항목에 사명감과 품위유지 항목을 추가하여 감리원이 높은 사명감과 투철한 직업의식을 가지고 품위 있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감리 수행주기별 감리윤리성 해당 항목을 매핑하고 발주 또는 감리 수행시 윤리 관련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감리법인이 감리사업 제안시 감리원 윤리 서약서를 제출하고 감리수행계획서에 포함시킴으로써 윤리 강령에 포함된 전문가적 태도와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감리원 윤리가이드 체계는 공인회계사 윤리기준을 참조하여 법조문 형식이 아닌 문단으로 구성하며,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 개념체계에 의한 접근방법을 적용하고 있는 국제적 윤리기준에 부합된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일반 사항에서는 윤리강령과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고 감리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 요소별 가이드를 제시한다.

[표] 감리원 윤리가이드 구성

구분	윤리성 준수 요소	비고
100 일반사항	110 개요 및 윤리강령	*회계감사사, CISA 등의 윤리 요소를 반영
	120 윤리기준 준수방안	
200 행동 지침	210 공익의 달성	
	220 객관성과 공정성 유지	
	230 준법성과 비밀에 대한 보안유지	
	240 전문성 유지	
	250 사명감과 품위유지	

## 제 2 절 감리원 윤리 강령

감리원 윤리 강령의 경우 감리독립성 확보와 감리원의 전문가적 태도 및 품위를 유지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보완한다.

나는 정보시스템감리를 수행함에 있어 감리원으로서의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여 정보기술 발전에 기여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한다.

나는 감리원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익의 달성을 우선으로 한다.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한다. **감리 독립성을 확보하고** 준법성과 비밀에 대한 보안을 유지한다. 지속적인 자기계발을 통하여 **전문성을 유지하고 전문가적 태도와 품위유지를 위해 노력한다.**

## 행동 지침

- 공익의 달성을 위하여, 국가와 사회의 이익을 우선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나의 이익을 위하여 국가나 사회의 공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 객관성과 공정성의 유지를 위하여,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항상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판단하며, 청렴 결백하고 소신있는 언행을 유지한다. 공사를 명확히 구분하고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배격한다.
- (추가) 감리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리 발주기관과 수행기관과의 이해에 따라 감리보고서가 변경되지 않도록 감리원은 감리독립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감리 독립성을 위해 감리 기준, 감리 요구사항, 감리 중적에 따라 감리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 준법성과 보안의 유지를 위하여,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 제 규정 및 실무 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관점에서 직무를 수행한다. 직무 수행과정에서 인지한 정보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누설하지 않는다.
- 전문성의 유지를 위하여, 감리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감리 기술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감리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의 확보와 유지를 위하여 부단한 자기개발 노력을 경주한다.
- (추가) 감리원의 전문가적 태도와 품위유지를 위하여, 전문가의 지식과 기준 근거에 의거 감리를 수행하며 감리 수행시 복장과 언어예절을 통해 전문가적 품위를 유지하도록 한다.

### 제 3 절 감리원 윤리 준수 요소

정보시스템 감리원의 윤리강령과 지침의 윤리 준수 요소는 아래표와 같다.

구분	윤리 준수 요소	설명
100 일반사항	110 개요 및 윤리강령	감리원 윤리강령은 감리 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가치관을 명문화하고 스스로 나아가야 할 자아상, 자기책무, 최소한의 행동 준칙 등을 내걸어 자기규제를 행할 기준
	120 윤리강령의 준수	감리원 윤리강령 준수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잠재적 위협을 평가하고 윤리적 갈등 해소, 갈등 유발 요소와의 연관 거부 등을 행하는 기준
200 행동지침	210 공익의 달성	국가와 사회의 이익을 우선하는 직무 수행과 감리원 이익을 위하여 공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기준
	220 객관성과 공정성 유지	직무를 수행함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판단하며,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배격하는 기준
	230 준법성과 비밀에 대한 보안유지	관계법령, 제 규정 및 실무 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관점에서 직무를 수행하고, 인지한 정보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하며, 누설하지 않는 기준
	240 전문성 유지	감리기술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 노력과 부단한 자기계발 노력을 위한 기준
	250 사명감과 품위유지	전문가의 지식과 기준 근거에 의거 감리를 수행하며 감리 수행시 복장과 언어예절을 통해 전문가적 품위를 유지하는 기준

## 제 4 절 감리원 윤리성 관리 점검항목

정보시스템 감리원이 감리를 수행하는 동안 윤리성이 관리되는 지를 판단할 수 있는 점검항목을 통해 자발적으로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윤리성 의식 강화 교육에서 활용하고 감리 발주부터 수행 단계까지 윤리성 관리항목이 준수 될 수 있도록 한다.

구분	점검항목	설명
감리원 자가점검	윤리적 갈등상황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합법적이며 사회 통념에 반하지 않는 지를 스스로 점검
	의사결정시	결정권과 권한을 적정하게 사용하는 지를 점검
	금품 및 향응	부득이한 식사나 편의, 부당한 지시, 알선 청탁 등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요소를 점검
	비밀 유지	감리시 수령한 어떠한 문서와 정보도 유출하지 않으며 보관하지 않는지 점검
	이해상충 금지	감리 수행중 다른 개인적인 업무 수행이나 부당한 이익, 금품 수수 등을 점검
	직무윤리	잘못된 일처리에 대한 시정, 사행성 행위 등의 직무윤리 준수 점검
	조직 문화	감리원 상호간 무시나 폭언을 하는 행위나 성별/종교/외모/학벌/장애 등의 차별 등 감리팀의 조직 문화를 점검
	성희롱	감리시 성적 언동과 신체적 접촉을 금지하고 성희롱 행동여부에 대해 점검
	자산 보호	감리시 수령받은 물품을 보전후 반납하며 고객 용품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등 고객 자산에 대한 사용 적정여부를 점검

## 제 5 절 정보시스템 감리원 윤리 가이드 본문

### 100. 일반 사항

#### 110. 개요 및 윤리강령

정보시스템감리원이라는 직업이 가지는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감리발주자 및 피감리인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자가 정보시스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므로 정보시스템감리원의 책임은 단지 본인이 소속해 있는 감리법인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의 직무에 그치지 아니하며, 정보시스템감리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감리원 윤리기준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 가이드는 『전자정부법』에 근거하여 등록된 정보시스템감리원이 전문 직업인으로서 준수하여야 할 윤리기준을 설명하고, 정보시스템감리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높은 수준으로 수행하게 하여 공익에 부합되게 하며, 정보시스템감리원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가이드는 정보시스템감리원 윤리의 근본원칙인 윤리강령을 설명하고 이를 적용하기 위한 개념체계를 제시하며 개념체계는 윤리강령을 준수하기 위한 지침들로 구성되어 있다. 정보시스템 감리원은 개념체계를 이용하여 윤리강령 준수의 위협요인을 파악하고, 위협의 심각성을 평가하며, 이러한 위협이 명백하게 경미한 경우 외에는, 해당 위협을 제거하거나 수용 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시키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적용하여 윤리강령의 준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본 가이드는 윤리성 개념체계를 구체적 상황에 대하여 적용하는 방안과 윤리강령의 준수에 대한 위협을 수용 가능한 수준이하로 감소시키는데 필요한 안전장치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해당 위협을 유발하는 행위나 관계에 대하여 적절한 안전장치를 적용할 수 없어 이를 회피하여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제시한다. 본 가이드는 정보시스템 감리에 참여하는 전문가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 정보시스템 감리원 윤리강령

나는 정보시스템감리를 수행함에 있어 감리원으로서의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여 성공적 정보화에 기여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한다.

나는 감리원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익의 달성을 우선으로 한다.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한다. 감리 독립성을 확보하고 준법성과 비밀에 대한 보안을 유지한다. 지속적인 자기계발을 통하여 전문성을 유지하고 전문가적 태도와 품위유지를 위해 노력한다.

### 행동지침

공익의 달성을 위하여, 국가와 사회의 이익을 우선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나의 이익을 위하여 국가나 사회의 공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객관성과 공정성의 유지를 위하여,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항상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판단하며, 청렴 결백하고 소신있는 언행을 유지한다. 공사를 명확히 구분하고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배격한다.

감리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주기관과 사업자의 이해에 따라 감리보고서가 변경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감리원은 감리 기준, 감리 요구사항, 감리 증적에 따라 감리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준법성과 보안의 유지를 위하여, 관계법령, 제 규정 및 실무 기준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 직무 수행과정에서 인지한 정보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누설하지 않는다.

전문성의 유지를 위하여, 감리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감리기술 발전에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감리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의 확보와 유지를 위하여 부단한 자기계발 노력을 경주한다.

감리원의 전문가적 태도와 품위유지를 위하여, 전문가의 지식과 기준에 근거하여 감리를 수행하며 감리 수행시 복장과 언어 예절을 지켜 전문가적 품위를 유지하도록 한다.

## 120 윤리강령의 준수

정보시스템감리원은 윤리강령의 준수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나 관계를 인지하거나, 또는 인지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윤리강령의 준수에 대한 위협을 평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정보시스템감리원은 위협의 심각성을 검토함에 있어서 양적 요인과 질적 요인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정보시스템감리원이 적절한 안전장치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의 수행을 거절할 수 있어야 한다.

정보시스템감리원이 고의성없이 윤리기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위반 사항의 성격과 심각성에 따라 위반이 발견되는 즉시 신속하게 위반 사항을 시정하고 필요한 안전장치를 적용한 경우에는 윤리강령이 준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윤리가이드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념체계 적용 사례들은 정보시스템감리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윤리강령을 준수하는데 위협이 되는 모든 상황을 빠짐없이 열거할 의도가 아니며, 그와 같이 해석되어서도 아니된다. 따라서 정보시스템감리원이 제시된 사례들만을 단순히 준수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하며,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직면하는 각각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개념체계를 적용하여야 한다.

윤리강령의 준수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협들은 상황에 따라 매우 다양하며,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분류된다.

- (1) 이기적 위협 : 정보시스템감리원 본인이 재무적 또는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발생한다.
- (2) 자기검토 위협 : 정보시스템감리원이 과거에 본인이 판단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를 수행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 (3) 유착 위협 : 정보시스템감리원이 밀접한 관계로 인하여 타인의 이익에 지나치게 동정적이 되는 경우에 발생한다.
- (4) 압력 위협 : 정보시스템감리원이 현실적 또는 잠재적인 협박의 가능성 때문에 공정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발생한다.



정보시스템감리원은 윤리강령의 준수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윤리적 갈등을 해결하여야 한다. 정보시스템감리원이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으로 윤리적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 해결과정의 일환으로 다음의 사항을 개별적으로 또는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1) 관련 사실
- (2) 관련된 윤리적 사안
- (3)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과 관련된 윤리강령
- (4) 갈등해결을 위한 절차
- (5) 일련의 대체적인 조치

정보시스템감리원은 상기 사항들을 고려한 후, 파악된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적절한 조치가 무엇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정보시스템감리원은 가능한 각각의 조치에 대하여 초래될 수 있는 결과를 비교해 보아야 한다. 정보시스템감리원은 갈등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적절한 타 구성원에게 해결책을 얻기 위하여 도움을 요청하여야 한다.

정보시스템감리원이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한 이후에도 윤리적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능하다면, 갈등을 일으키는 해당 사안과의 연관을 거부하여야 한다.

## 200 행동 지침

### 210 공익의 달성

국가와 사회의 이익을 우선하여 정보시스템감리원 직무를 수행하고 정보시스템감리원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공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감리의 결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과 특정 단체, 개인의 이익이 충돌할 경우에는 그 결정에 따라 해당 단체, 개인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한 공공의 이익에 유리한 방향으로 감리 의견을 제시한다.

정보시스템감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감리기술의 발전에

활용할 수 있으나 이를 이용하여 사적인 이득을 취하는 행위는 금지하여야 한다. 또한 피감리인에 대한 우월적 위치를 이용하여 알선, 인사 청탁 등을 하지 말아야 하며 이권에 개입해서도 안된다.

- 예시)
- 감리수행에서 취득한 자료를 후속 사업 등 제안 작성 업체에게 댓가를 받고 제공하는 행위
    - 공공 기관이 매년 발주하는 정보화 사업에 수주하려는 기업체에게 해당 공공기관 감리시 취득한 정보를 영업 정보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경우 고객 비밀유지에 위배됨
  - 감리수행에서 취득한 자료를 감리원의 개인적 연구, 강의, 사업 수행 등에 활용하는 행위
    - 감리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고객으로부터 취득한 감리자료를 활용하거나, 개인적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에 고객 비밀 유지 원칙에 위배된다.

**사례**

A법인은 감리와 교육 및 컨설팅을 함께 하는 조직이다. A법인에 속한 감리원은 감리를 하면서 교육 컨설팅 고객을 유치할 것을 권유 받는다. 이들은 중대한 지적 사항에 대한 삭제 및 조정 등을 피감리업체와의 협상도구로 활용하면서 교육이나 컨설팅에 대한 세일즈를 해야 한다. A법인 소속 감리원이 소속 조직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려면 어떤 직무 윤리의 준수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해야 할까?

**사례**

특정 공공기관의 정보화사업 감리를 통하여 발견한 문제점 및 해결 사례에 대하여 타 공공기관 정보화사업 감리시 이를 활용하여 유사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당초 기관 담당자에게 타 기관 정보제공 가능여부를 사전에 협의하지 않았다.

## 220 객관성과 공정성 유지

객관성과 공정성 유지강령은 모든 정보시스템감리원에게 전문가적인 또는 사업적인 관계에 있어서 솔직하고 정직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한다. 성실은 또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해야 하고 진실성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정보시스템감리원은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고 믿어지는 감리보고서, 감리일지, 감리공문 또는 기타정보 등에 자신의 명칭이 사용되는 것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1) 그 내용이 중대하게 잘못된 경우 (2) 내용 중에 무모하게 삽입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3) 필요한 정보가 누락되었거나 애매모호하게 표현됨으로써 사실을 오도하는 경우이다.

공정성 유지 강령은 모든 정보시스템감리원에게 편견, 이해의 갈등 또는 타인의 부당한 영향 때문에 전문가적이거나 사업적인 판단을 훼손하면 안된다는 의무를 부과한다. 정보시스템감리원은 공정함이 손상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상황을 정의하거나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보시스템감리원은 전문가적 판단을 함에 있어서 편견을 일으키거나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를 회피하여야 한다.

예시)

- 발주기관의 무리한 요구사항을 개발업체가 수용하도록 고압적 감리 수행
  - 감리 수행 중 발주기관의 요구사항 추가, 기능 변경을 감리보고서에 추가
  - 감리원이 개발업체에게 위험을 과다하게 부각시키거나 감리보고서 반영을 빌미로 하여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수용토록 하여 감리 공정성을 훼손함
- 개발업체가 제출한 문서가 극히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개발업체의 편에 서서 감리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 감리 보고서상에 감리내용을 누락되었거나 애매모호하게 표현하여 사실을 오도함으로써 감리 공정성을 훼손함
- 근거와 기준이 없는 감리보고서
  - 감리 보고서를 감리 기준 및 근거문서에 의하지 않고 주관적 기준을 만들어 적용하거나 근거 없는 감리원만의 기준으로 감리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감리 객관성을 상실하게 됨

### 사례

A씨는 B사업에 대한 감리 수행 중 C업무에 대한 기능 미비를 내용으로 하는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였다. 그런데 피감리업체는 이 부분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면서 지적 내용이 부당함을 입증하였다. 그러나 A씨는 이전의 감리 또는 사업 수행 과정에서 이 부분의 업무가 필연적으로 중대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나 초안에 작성된 단편적인 문제에 대한 피감리업체의 소명은 타당해 보였다. A씨는 어떤 보고서를 써야 하는가?

### 사례

계약 이후 발주기관의 추가/변경 요구사항에 따라 사업자가 추가 비용 및 계약 기간 연장 등의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당초 설정한 정보화사업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요구사항으로 판단하여 감리보고서를 작성하였다.

## 230 준법성과 비밀에 대한 보안유지

비밀유지 강령은 정보시스템감리원에게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과한다. (1) 직무상 지득한 기밀정보를 법적 또는 직업적으로 공개할 권리나 의무가 없는 경우에, 적절하고 명확한 승인없이, 발주기관 외의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 (2) 직무상 지득한 기밀정보를 본인이나 제 3 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행위이다. 정보시스템감리원은 친밀한 관계에서도 비밀유지 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정보시스템감리원은 사업수행 상의 관계자에서 우연하게 기밀을 누설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특히 경계하여야 한다. 정보시스템감리원은 발주기관이나 수행기관이 제공한 정보에 대해서도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정보시스템감리원은 감리법인이나 소속기관 내부에서도 정보에 대한 기밀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정보시스템감리원은 감리발주기관 또는 감리법인과 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도 비밀유지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정보시스템감리원은 직무수행과정에서 지득한 어떠한 기밀 정보도 사용하거나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지득한 어떠한 기밀 정보도 감리법인과 개인의 목적으로 활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예시)

- 사업에서 취득 또는 지득한 정보 시스템 정보를 해외에 유출하는 경우
  - 국가 주요 정보시스템의 시스템 구성도를 기반으로 해킹 등 국가 정보 보호망 위협
  - 유출한 정보가 유출국가의 특허, 유출 국가 기술로 귀속되어 국가적 경제손실 유발
- 사업에서 취득 또는 지득한 정보 시스템 정보를 국내 민간 기업에 유출하여 공공성 훼손하는 경우
  - 국가 주요 정보시스템에 사용된 기술을 이용하여 민간기업의 상업적 목적으로 전환
  - 상업적 목적의 사용 기술이 국가 정보화 사업을 제한하게 되는 역류 현상
- 전자정부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행정처분 규정을 위반한 경우
  - 감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 감리원이 아닌 사람에게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 거짓으로 감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 사례

A씨는 감리 수행 중 통합테스트가 적절하게 계획되고 수행되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다. 초안 보고서에 대한 피감리업체 담당자 B와의 리뷰과정에서 본 내용을 보고서에 작성하지 않는다면 감리 종료 이후에 반드시 적절한 테스트를 수행하겠다는 말을 들었다. 피감리업체의 말을 믿은 A씨는 최대한 애매한 표현을 사용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는 어떤 직무 윤리 위반사항인가?

#### 사례

통합테스트를 완료한 시스템을 대상으로 과업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적합, 부적합, 점검 제외로 판정하였다. 점검제외로 분류한 사항중 발주기관의 지원 부족이나 의사결정 지연 요구사항에 대하여 사업자가 유지보수 기간 중에 보완하겠다는 다짐을 받고 모두 적합으로 변경하였다.

## 240 전문성 유지

전문성 유지 강령은 정보시스템감리원에게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과한다. (1) 정보시스템감리원은 적격성을 갖춘 전문서비스를 제공하기에 합당한 수준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유지해야 한다. (2) 정보시스템감리원은 전문서비스를 제공함에 있

어 정당한 주의를 기울여 관련 기술적 기준 및 전문적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적격성을 갖춘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적용함에 있어 건전한 판단력을 발휘하여야 한다. 전문가적 적격성은 다음의 두 가지 단계로 구분된다. (1)전문가적 적격성의 습득 (2)전문가적 적격성의 유지이다. 전문가적 적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기술적, 전문가적, 사업적 발전 동향에 대한 계속적인 관심과 이해가 필요하다.

정보시스템감리원은 지속적인 전문가적 개발을 통해 전문적인 환경 속에서 적격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하고 유지할 수 있다. 정보시스템감리원은 맡은 업무의 요구조건에 따라, 철저하고도 신중하며 적시에 업무를 수행할 책임을 포함한다.

정보시스템감리원은 필요하다면 발주기관에게 감리전문서비스가 갖는 고유한계를 일깨워 줌으로써 정보시스템감리원의 의견표명이 사실에 대한 주장으로 잘못 해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예시)

- 전문성을 요구하는 감리를 전문성이 없는 감리원이 수행하는 경우
  - 단기간에 수행되는 단계별 감리에서 빅데이터 기술 등의 특정 기술이나 은행 위험 분석 시스템 등의 특정 정보시스템을 전문지식과 경험이 없는 감리원이 감리를 하는 경우 제대로 된 감리를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건전한 판단력을 가지기 어려움
  - 감리를 위하여 높은 기술적 견해를 가진 전문가적 능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나 비(非) 감리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전문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우므로 감리계속 교육 등의 활용이 필요함

## 사례

A씨는 U-City에 대한 감리에 투입 예정이다. (예정된) 총괄 감리원으로서 그는 U-city 구축 방법론 등 사업 프로세스에 대한 자료, 관련된 규정과 지침, RFID, USN 등 기술요소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여 투입될 감리원과 공유한다. 이는 어떤 직무윤리를 만족하기 위한 활동인가?

## 사례

감리팀 편성 결과에 따라 그동안 수행하지 않았던 감리영역을 배정받은 감리원은 감리계획서상의 점검항목에 대하여 사업자의 지원을 받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는 감리보고서를 작성하였다.

## 250 사명감과 품위 유지

사명감과 품위유지 강령은 정보시스템감리원에게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정보시스템감리원의 품위를 실추시키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과한다. 정보시스템감리원이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알고 있는 합리적인 제 3 자가 정보시스템감리원의 명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행동을 말한다.

정보시스템감리원은 자신과 자신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보시스템감리원의 품위를 실추시켜서는 아니된다. 정보시스템감리원은 정직하고 진실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정보시스템감리원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내용과, 정보시스템감리원의 자격 또는 정보시스템감리원의 업무경험 등에 대한 과장된 주장 (2) 다른 정보시스템감리원의 업무에 대한 비방 또는 입증되지 내용 기술, 정보시스템감리원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감리의 권한 이용 또는 금전 등의 제공에 의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직무상의 경쟁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보시스템 감리원으로서 기본적으로 윤리적(ethical) 태도를 취해야 하며 감리결과를 공정하게 제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

- 개방적(open-minded) 대안이 되는 아이디어나 관점을 고려하려는 의지
- 외교적(diplomatic) 다양한 사람을 대하는 솜씨

- 주의력(observant) 물리적인 주변 상황과 활동을 능동적으로 인식
- 통찰력(perceptive) 상황을 직감적으로 인지하고 이해
- 유연성(versatile) 서로 다른 상황에 적절하게 적응
- 집요함(tenacious) 감리 목표 달성에 끈기있게 집중
- 확고함(decisive) 논리적 이유 및 분석에 근거하여 시의 적절한 결론에 도달
- 자신감(self-reliant) 타인과 효과적으로 교류하면서도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역할을 수행
- 의연한 행동(acting with fortitude) 행동이 항상 인정받지 못하고 때로는 반대나 대결에 직면하더라도 책임감있고 윤리적으로 행동
- 개선 수용 (open to improvement) 기꺼이 현장에서 배우고 더 나은 감리결과를 위해 노력
- 문화적 감성(culturally sensitive) 피감리자의 문화를 배려하고 존중
- 협력 (collaborative) 감리팀원과 피감리인 등 타인과 효과적으로 교류

감리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감리 수행 과정에서 발주자와 피감리인을 대하는 태도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외형적으로 전문가적인 모습과 함께 언행, 문서 표현 등에 있어서도 아래의 감리원 자가 점검을 통해 상기 태도를 견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

감리 수행 과정에서 전문가적인 모습과 품위를 보여주려면 감리원의 복장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감리수행 시 좋은 대인관계를 통해 원활할 감리 수행을 위해 아래의 복장지침을 따르도록 한다.

- (1) 복장은 감리원의 전문성을 보여줄 수 있는 복장이어야 한다.
- (2) 복장과 행동은 감리환경에 부합되어야 한다. 지나칠 정도로 평상복이나 격식에 맞지않는 복장을 입는 것은 감리수행에도 도움이 되지 못하고 타인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한다.
- (3) 감리에 요구되는 복장은 감리단계별 시점과와 감리업무에 적합한 예절과 위생을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 공식적인 착수회의 및 종료회의를 하는 경우 감리원은 정장을 갖추도록 한다.
- (4) 적절한 근무 복장이어야 한다. 그리고 용모는 타인에게 거부감이나 혐오감을



취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 용모는 감리수행에 적합해야 하며 항상 단정하고 청결하여야 한다.

감리원의 태도란 감리수행과 관련하여 감리원이 갖는 정신적인 마음의 자세, 경향성, 그리고 에티켓 등은 대인관계 및 감리수행에 결정적인 영향 요인이다. 감리수행에 적합한 태도란 감리원이 수행하는 감리에 책임을 지려는 자세와 함께 감리수행 영역과 감리환경에 개인적인 편견을 갖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바람직한 감리원의 태도에 관한 지침은 다음과 같다.

- ① 수용적인 태도를 갖고 감리 업무 수행하는 자세
- ② 자발적으로 감리수행시 요구되는 규칙을 준수하는 태도
- ③ 동료감리원에 대한 관심을 갖고서 그들과 팀으로 함께하는 태도
- ④ 발주기관과 개발업체와 공정하며 합리적인 의사 소통 태도

감리원은 책임감과 전문적인 자질을 갖고 자신의 업무에 임해야 한다. 이러한 태도는 감리수행과 감리원 명예에 크게 기여한다. 또한 근면과 변화를 수용하려는 자세도 아주 중요하다. 타인과 협동하고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 업무와 관련된 높은 수준의 성실성과 윤리의식, 공동이익에 기여하는 과업수행에 있어서의 온당한 융통성 등을 발휘할 수 있는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

감리원이 갖는 태도는 감리산업 및 감리업무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자신이 하고 있는 업무를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는 태도는 자신의 업무수행, 주도성, 용모, 타인과의 관계 등 모든 영역에 좋지 않게 반영될 것임을 유의하여야 한다.

예시)

- 감리원의 권한을 이용하여 금전 등의 요구행위를 한 경우
  - 감리원이 감리 시 중대한 오류나 심각한 위반을 발견하여 이를 빌미로 개발업체에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하는 행위는 감리원의 사명과 품위를 생각하지 않는 행위임. 이러한 비윤리적 행위로 인해 소속 기업이나 개인의 윤리성이 즉각 노출되어 기업과 개인은 심각한 사회적 비난을 받게 됨. 심지어 사회에서 도태되는 결과를 초래함. 또한 감리 전문가의 자긍

심이 저하되고 궁극적으로는 기업과 개인의 이익이 감소되는 악순환이 계속 될 수 있음

○ 감리현장에서 전문가로서의 감리원이 정장을 갖춰 입지 않고 반말 투로 감리하는 경우

- 감리원의 부적절한 복장과 태도로 인해 감리원의 자질을 의심받게 하며 품위를 실추시키는 행동으로 전체 감리원의 윤리성을 문제시 하는 결과를 유발할 수 있음

#### 사례

A씨는 전자정부 사업 감리 과정 도중에 피감리업체 직원인 B씨에게 “감리 보고서에 쓸 내용을 알려 달라” 고 했다. 이 경우 어떤 윤리 원칙에 위배 되는가?

#### 사례

감리대상 정보화사업을 수행하는 사업팀의 참여인력이 30~40대 인력으로 감리원 연배보다 낮고 경력이 짧아 아랫사람을 대하는 표현으로 인터뷰나 감리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 제 6 장 맺음말

본 감리원 윤리가이드(안)은 정보시스템 감리원 윤리 강령에 따라 감리원이 감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준수해야 할 윤리 요소와 활동을 가이드하기 위해 개발하였다. 감리 법령 위반 및 비리에 관한 사항은 그동안 현황조사 결과 정보시스템 감리분야는 사례가 많지 않았다. 그러므로 비리와 부패를 방지하는 윤리가이드 보다는 정보시스템 감리원의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고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최근 감리현장에서 전문가로서의 감리원이 갖춰야 할 복장과 태도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하였다.

본 감리원 윤리가이드를 작성하기 위해 윤리의 기본적인 개념과 의미를 정의하고, 감리 유사분야인 공직 감사관, 건설감리원, 회계사, 민간기업 감사사 등의 윤리 활동과 그에 필요한 가이드 현황을 조사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가이드의 구성은 가이드의 가시성과 활용 용이성을 위해 윤리 가이드의 체계에 따라 감리원 윤리강령과 준수해야 할 요소를 정의하였다. 감리원의 윤리성을 확보하고 관리하기 위한 절차와 함께 관리요소별 점검항목을 두어 감리원이 감리업무를 수행하면서 스스로 윤리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가이드가 감리원 가까이에서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감리원 전문교육 및 계속교육에 과목으로 필수적으로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본 가이드를 사례와 예시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정하는 활동을 기대한다.

# 정보시스템 감리원 윤리 가이드

2014년 12월 발행

발행처 : 한국정보화진흥원

## < 가이드 개발 참여진 >

한국정보화진흥원 이현동 부장

한국정보화진흥원 이병만 연구위원

한국정보화진흥원 서운석 수석

와이드큐브 박상희 대표컨설턴트

에이스솔루션 김기홍 대표이사

◎ 본 가이드 내용의 무단전재(無斷轉載)를 금하며, 가공·인용 시에는 반드시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시스템 감리원 윤리 가이드」라고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가이드의 내용과 관련한 문의는 아래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한국정보화진흥원 전자정부연구부  
전화번호 (02) 2131-0453 (서운석 수석)

※ 본 자료는 한국정보화진흥원 홈페이지([www.nia.or.kr](http://www.nia.or.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